

# 합병종료보고의 공고

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는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마켓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,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, 이에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- 아 래 -

## 1. 합병의 내용

- 1)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가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마켓을 흡수합병함
- 2) 합병비율 :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: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마켓 = 1 : 0
- 3) 합병기일 : 2018년 11월 1일

## 2. 합병진행 경과

- 1) 합병계약 이사회 결의일 : 2018년 8월 27일
- 2)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: 2018년 8월 27일
- 3) 합병계약 체결일 : 2018년 8월 28일
- 4) 주주확정 기준일 및 소규모 합병 공고일 : 2018년 9월 11일
- 5)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18년 9월 12일 ~ 2018년 9월 17일
- 6)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 기간 : 2018년 9월 12일 ~ 2018년 9월 27일
- 7)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: 2018년 9월 28일
- 8)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: 2018년 9월 28일
- 9)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18년 9월 28일 ~ 2018년 10월 29일
- 10) 합병등기 및 종료보고 공고 예정일 : 2018년 11월 2일

## 3.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- 1) 주식매수청구 :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
- 2) 채권자 이의신청 : 없음

2018년 11월 2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, 삼성동빌딩 16층

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

대표이사 김규일